

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3-68
----------	------

제출년월일 : 2002. 11.30.

제출자 : 파주시장

☐ 재안 이유

청소년보호법제25조에는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에 대한 단속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동조례에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한 업소단속에 관한 사항이 누락되어 있어 추가하려는 것임

☐ 주요골자

- 청소년통행금지·제한구역의 관리및 운영에 있어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선도 및 단속계획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함 (안 제7조①항)

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

파주시청소년통행금지구역등지정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조제1항중 “별도의 선도계획”을 “구체적인 선도 및 업소단속 계획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소관 실·과·소		사회복지과 ☎940-4428
입안자	사회복지과장	이평자
	청소년담당	이용재
	담당자	권대훈

신 · 구문 대조표

현 행	개 정 안
제7조(구역의 관리·운영) ①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<u>별도의</u> <u>선도계획</u> 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	제7조(구역의 관리·운영) ①시장은 해당구역내에서 청소년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하기 위하여 <u>구체적</u> 인 <u>선도 및 업소단속계획</u> 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